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17. ~ 12.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 제목 “(한반도평화경청단)”을 “(한반도평화경청단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한반도평화경청단”을 “한반도평화경청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한반도평화경청단에”를 “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327”을 “32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22”를 “32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02”를 “30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한반도평화경청단) ① 장 관 밑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 로 <u>한반도평화경청단</u> 을 둔다.	제38조(한반도평화경청단장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한반도평화경청단장</u> 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한반도평화경청단에</u>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	④ <u>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</u> - 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「 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 」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평화 경청단장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하 다.	⑥ 「 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 」 제12조제3항에 따 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 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 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통일부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27</u>	<u>328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22</u>	<u>323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302</u>	<u>30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3